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. 10. 16 선고 2013가합10696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

피고A

변론 종결2014. 9. 25.

판결 선고201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동양일렉트로닉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2. 8. 31.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동양일렉트로닉스에게 제1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2. 8. 31. 접수 B로 마친 권리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주식회사 동양일렉트로닉스(이하 '동양일렉'이라 한다.)에 대한 채권

1) 주식회사 C(이하 'C'라 한다.)는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'하나은행'이라 한다.)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① 2011. 3. 7. 보증금액 1억 4,200만 원, 보증기한 2012. 9. 7.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(이하 '제1보증약정'이라 한다.)을, ② 2011. 3. 7. 보증금액 8,300만 원, 보증기한 2012. 9. 7.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(이하 '제2보증약정'이라 한다.)을 각 체결하고, 이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4,200만 원(제1보증약정) 및 8,300만 원(제2보증약정)을 각 대출받았다.

2) 동양일렉, D, E, F(이하 '동양일렉 등'이라 한다.)은 제1, 2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3) 그런데 C가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2. 5. 14.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, 원고는 2012. 8. 21. 하나은행에 제1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144,974,640원, 제2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84,738,700원 등 합계 229,713,3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4) 이에 원고는 주채무자인 C 및 연대보증인인 동양일렉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8431호로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채권 230,891,050원(= 대위변제금 220,713,340원 + 채권보전 및 집행비용 1,177,710원)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3. 6. 19. 'C와 동양일렉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,891,050원 및 그 중 229,713,340원에 대하여 2012. 8. 21.부터 2012. 9. 28.까지 연 14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'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,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

나. 동양일렉의 피고에 대한 특허권 양도

동양일렉은 2012. 8. 31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(이하 '이 사건 특허권'이라 한다.)을 양도하고(이하 '이 사건 양도계약'이라 한다.), 같은 날 위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B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.

다. 동양일렉의 자산 상태

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동양일렉은 이 사건 특허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, 위 가.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30,891,05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,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채무초과상태에 관한 판단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양일렉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거나 더욱 악화시켰다고 판단된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당시 동양일렉이 8억 4,500만 원 상당의 C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양일렉은 2010. 10.경 C의 전체 주식 190만 주 중 169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는 2012. 5.경 이미 소극재산(1,869,695,000원)이 적극재산(998,253,000원)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양일렉이 보유한 C 주식이 8억 4,500만 원 상당에 이를 만큼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

1)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동양일렉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동양일렉이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의 동양일렉에 대한 채권의 기초가 발생하기 전인 2007. 8. 29. 체결된 '채불임금 및 퇴직금에 갈음한 대물변제 약정'에 기한 이행 절차일 뿐이므로,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가)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. 8. 29. 동양일렉의 명의로 '동양일렉은 피고가 동양일렉에서 일반관리부 직원으로 2004. 3.부터 2007. 7. 31.까지 41개월간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102,918,714원의 임금 및 9,190,962원의 퇴직금을 2009. 8. 29.까지 변제하되,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동양일렉의 부동산, 지적재산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변제한다.'는 내용의 '채불급여 이행각서'가 작성된 사실, 위 이행각서에 같은 날짜로 발행된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은 인정된다.

나) 그런데 앞서 든 부합증거 및 갑 제3호증,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D의 이모로서(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.) 동양일렉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6. 7. 6. 이사로 취임하여 2009. 3. 31. 퇴임한 후 다시 2009. 5. 13.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, 앞서 본 '체불급여 이행각서'에 첨부된 피고의 체불급여 내역서에 의하면, 피고는 동양일렉에 2004. 3.경 입사한 이래 2004. 12.경 및 2005. 1.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22만 5,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그 밖에는 전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, 동양일렉의 본점 주소지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인 반면, 피고는 2006. 1. 24.경 전북 장수군 G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위 이행각서가 작성된 2007. 8. 29.경까지 주민등록지의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

다)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'체불급여 이행각서'상 피고가 동양일렉에서 근무하였다는 기간(2004. 3.경부터 2007. 7. 31.까지)과 동양일렉의 법인등기부상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점, ② 피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3년 5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320여 만 원에 불과한 반면 약 1억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인데, 위 근무기간 및 체불액수, 그리고 앞서 본 법인등기부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체만으로도 피고를 동양일렉의 일반적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, ③ 또한 동양일렉의 사업장 주소와 피고가 동양일렉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주민등록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도 과연 피고가 동양일렉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, ④ 동양일렉은 C의 대주주이자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고, 피고는 C의 대표이사 D의 이모라는 사정 또한 피고와 C, 동양일렉 사이의 긴밀하고 특수한 관계를 추단케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는 점, ⑤ 그리고 이 사건 권리 전부이전등록이 위 '체불급여 이행각서'상의 변제기일인 2009. 8. 29. 보다 무려 3년 가량 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위 '체불급여 이행각서'의 존재만으로는 피고가 동양일렉에 대하여 실제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오히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행각서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.

라) 설령 피고 주장의 대물변제 약정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, 위 '체불급여 이행각서'의 기재내용의 포괄성, 특히 이 사건 특허권 중 별지 목록 순번 4번 및 8번 특허권은 위

이행각서 작성일인 2007. 8. 29. 이후 또는 위 이행각서상 변제기인 2009. 8. 29. 이후에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물변제의 대상이 확정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.

마) 그렇다면 2007. 8. 29.자 대물변제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

한편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도 하나,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없고,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, 동양일렉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라. 취소 및 원상회복

결국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인 동양일렉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.

재판장판사윤상도

판사임동한

판사조아라

별지